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24.05.07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10,000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14년 15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귀중

리스회사사용

리스이용자와 연대보증인은 아래 리스차량 및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맞음을 확인하고, 리스조건표 및 첨부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회사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한 시설대여를 의미합니다.)

«CSDate»

리스차량정보				
차종 / 모델 / 색상	등록명	차량가격	옵션	총 차량가격
«ACIMdl» / «ACIMdlName» /	☒ 금융회사	원	원	«InvPri» 원
차대번호	계약대수	판매사	판매 직원	금융 담당 직원
	1 대	«Dealer»	«SPName»	«FCName»

리스조건				
리스기간	«tt1» 12 개월 «tt2» 24 개월 «tt3» 36 개월 «tt4» 48 개월 «tt5» 60 개월 «tt6» ()개월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납입조건	☒ 후불	
리스 종료시 처리	반납, 재리스, 구매 중 택일	결제방법	☒ 자동이체	
교통법칙금	☒ 대 납	자동차세 포함여부	«tct1» 포 함 «tct2» 불 포 함	
잔존가치 / 유예금	«RVAmt» 원		보험료 포함여부	«tif1» 포 함 «tif2» 불 포 함
보증금	«SecDep» 원		선납금	«PrePay» 원
취득원가	«FinAmt» 원			
월 리스료	«MPAmt» 원			
보증금/선납금 납입에 따른 예상할인율	보증금 / 선납금 / 선납리스료에 따른 리스료의 예상 할인율 및 할인 금액 («EDRPay»)% / («EDAmt»)원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80)% x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규정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 최고요율(15)% x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2)% x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승계수수료 최소 금액	400,000 원	승계수수료 최대 금액	2,000,000 원
지연배상금율	연 (24)%			
반환지연금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100)%)] x 경과일수 (*단, 일리스료는 월리스료의 1/30 로 규정함.)			
반환자동차평가 및 가치감가비용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또는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감가비 산정기준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보증조건	보증채무최고액	원	보증기간	개월
초과 운행 거리(km)	1 만 이하	1 만 초과 ,2 만 이하	2 만 초과 ,4 만 이하	4 만 초과
초과 운행료(km 당)	100 원	200 원	500 원	1,000 원
	*단, 재리스의 경우 기존 리스계약기간의 운행거리를 포함하여 초과운행료를 산정함.			

보험조건 *리스기간 동안 보험료를 본 계약에 포함시키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험 관리 주체	«tip1» 금융회사 «r1» 리스 이용자	보험사	«Insurer»
운전자연령	☐ ()세 이상 전 연령	대상구분	☐ 개인용 ☐ 업무용
가입조건	☐ 가족한정 ☐ 부부한정 ☐ 본인한정 ☐ 누구나 운전 ☐ 기타 : ()		
의무가입사항	☐ 대인배상 I II ☐ 대물 ☐ 자손 ☐ 자차 ☐ 기타 : ()		
필수선택 가입사항	대물배상사고	☐ 5 천만원 ☐ 1 억원 ☐ 2 억원 ☐ 무한	자기신체사고 ☐ 1 천만원 ☐ 5 천만원 ☐ 기타: ()

업무용차량 이용확인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본인은 상기 리스차량의 운용리스 이용과 관련하여, 동 리스차량은 귀사의 리스이용자가 개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무(계산서 발행처)와관련된 것임을 확인하며,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필		
	리스이용자 겸 본인 :	«BName»	계산서 발행처(공급받는 자) : «BName»





주요 안내 사항	1)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리스사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고객님의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규정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3)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감가비용 : 고객님의 리스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 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여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제 1 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 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합니다.) 4) 리스보증금 : 고객은 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 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5) 선납금/선납리스료 :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①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산정 ②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23 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음.) ③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④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단, 상기 선납금/선납리스료 처리 방법 중 당사는 ③번과 ④번의 방법을 제공하며, 그 중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6) 만기 시 처리방법 :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의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약관 제 40조	연대 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 일 때 (1인)	☐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 대표이사 ☐ 무한책임사원		
	자동차구입때	☐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 ☐ 영업목적 차량 구입		
	기타	☐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		
	보증종류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 특정근보증 ☐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용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연대보증인 1	«GName»	생년월일	«GDOB»
	자택주소	«GAddr»	신청인과의관계	«RelBor»
			전화번호	«GMob»
	직장(사업자)명	«GComp»	부서명	
	직위		재직(사업)기간	«GWrkDY» 년 «GWrkDM»개월
	보증내용	보증최고채무액	«MaxGuranAmt» 원	보증기간 «CorpTerms»개월
※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의 총액)의 130%입니다. (단 자동차 구입시 100%)				

기타 특약사항	«CoPrCo» «OLCampaignDescriptionS6»
계약관련 고지사항	1.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로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시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을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스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 층 (남대문로 5 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토마스 알렉산더 바거스하우저

금융담당직원	리스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하였습니다. «CSDate» 성 명 : «FCName»
--------	---

리스이용자(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내용인 신청사항 및 리스조건 세부사항 그리고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본인)	«CSDate» 신 청 인 (본 인) : «BName»
연대보증인	연 대 보 증 인 1 : «GName»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2021.11.02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개기비판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에서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에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한 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2."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격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4."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5."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 23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 24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로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 29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반환지연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 29 조제 4 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초과당첨비용"이라 함은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 27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0."미회수원금"이라 함은 자동차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리스로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리스계약이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매입가격, 취득세, 자동차 구입을 위한 채권매입할인비용, 기타 부대비용(특송료 등) 등이 포함됩니다.
11."리스료"라 함은 운용리스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2."폐차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리스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자동차정보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이자율(금융리스의 경우에 한함)
3.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지연지연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상환요율
4.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종료행위

제 5 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묵을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문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개기비판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자체없이 고객에게 교부(전자의 경우)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서면으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⑤ 고객은 제 9 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기 없는 한 제 8 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 13 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① 리스계약은 고의의 착각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인수증(전자서명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제 21 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계약체결 및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리스계약 체결 관련 인지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제 7 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로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규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제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법규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법규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 8 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 6 조 제 3 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시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 1 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며, 금융회사가 동등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등록세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 지면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면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 1 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이 자동차를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더라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부담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게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 1 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기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법규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10 조 (소유권 및 권리의 인도)
① 고객은 제 3 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책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리스보통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통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통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통금 납입시의 할인대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종료되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통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통금은 고객이 면제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통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상환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로 재산정(단,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23 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을 적용한 수수로 정할 수 있음)
3.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 13 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권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정,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 3 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통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사용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3.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자동차를 제 3 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받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 15 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리스자동차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장치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보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장부로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② 제 1 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6 조 (고객에 의한 보험금)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다.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자기자랑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집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은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 16 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자랑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집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 1 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식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시에 고객과 합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통지를 받아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갱신시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정한 바에 따라 갱신 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⑤ 제 21 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지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⑥ 제 5 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게 부담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8 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 17 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기록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보험회사의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 26 조에 의한 자동차차기 감가비용 청구시 격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선 및 추정전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0 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로 보험요율에 불리하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제 21 조 (계약의 중도해지)

-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 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통행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 14 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 3. 제 15 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4.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 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당한 경우
- ④ 고객이 할리스코를 2 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자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 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 ⑤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인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 22 조 (중도해지에 따른 전상)

- ① 고객은 제 21 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3 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 24 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고정장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 23 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장산업무에 현조하기로 합니다.
- ⑤ 고객은 계약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제 1 항의 손해배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⑥ 고객은 고객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미회수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⑦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⑧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할 금액을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 23 조 (규정손해배상금)

-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③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④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들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 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⑤ 규정손해배상금들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4 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들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 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들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5 조 (리스계약의 종료)

- ① 이 계약이 정상으로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 21 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제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④ 제 3 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 26 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평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통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평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결정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통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 ② 고객이 제 1 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교체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 4. 제 15 조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 27 조 (초과운행부담금)

-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 당 초과운행료
- ② 제 1 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28 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 이 계약이 정상으로 되거나 제 21 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 29 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면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 1.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제 29 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일이 다음날부터 한해일까지 한편날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통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한해일 중 하루만 포함
- ② 제 1 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날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율)] × 경과일수
- ⑤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원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 1 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제 1 항의 지급일 및 제 5 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 30 조 (통지 의무)

-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 3 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나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 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31 조 (권한서류의 보완 요청)

-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 32 조 (승계)

-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④ 제 3 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금융감독원 사후보고 접수일자: 2024.09.23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결제"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자금융보조장치"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결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대출업무, 환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라. 기록부터 다목적의 사업자의 채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족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지급매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체크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지급결제"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계좌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회사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3. "가맹점"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5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2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장에서 정상적인营业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거래 - 전화기에 의한 거래 -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 4 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치 -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 16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 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 6 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 7 조 (이용시간)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알립니다. 제 8 조 (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 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를 준용합니다. 제 9 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 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 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意的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거래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 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통산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산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전자지급거래의 예외)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전자지급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① 이용자는 제 11 조에 의하여 원료되지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또는 금융회사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 거래의 원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사망·파산·선환전고·파산정주전고·파산정주전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 (사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중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장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 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 18 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장치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중소기업)을 제외한다)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제 16 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 2 조 제 4 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 17 조 (거래기록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간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간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 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 일 이내

19 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 20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0 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 21 조 (거래내용 녹음)

-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비밀보장의무 등)

-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약관의 명시·고부·설명)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24 조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25 조 (약관의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규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6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27 조 (의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9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24.01.02

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알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범위)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사실 (대리·상, 할부 금융, 대출, 팩트팩트, 어음할인, 지급보증, 약관한,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 3 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자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2 조, 제 15 조 제 1 항, 제 18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리스·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원금상환 수 있음을 원천으로 하는 것
 2. 채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제 2 항 제 1 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제 2 항 제 2 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속 등에 따릅니다.
-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시장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조치 이하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지점일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에서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3 항 및 제 6 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요인은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 11 조에 따른 기간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에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을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 5 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이자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약정이자율은 다음 <상표>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 86 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보통형 금융기관 자금평균대출금리(신규금리 기준) 중 상모금융 기관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보증방법)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외의 상실회상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보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제공을 조서·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회회 지체에 따른 통속을 위한 통지비용
- 제 1 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갈등 때까지의 날짜수만큼, 상환 제 54 조(상사법정이율)법(현행 6%)내에서 약정금리(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사실대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반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금융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 해지)

-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약화되거나 담보물의 가격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 7 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으로써 적절함에 좇당하여,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 16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인 제 3 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매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3. 경매시장이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평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 및 제 3 호에 준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제 6 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의 방식을 준수하여도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 2 항제 5 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한)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수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해당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4.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소멸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보전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 3 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 3 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기업)에 한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정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기타의 유가증권,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수용하거나 제 2 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 항에 따라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 3 자로 하거나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제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채무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그 거래의 미반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신용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은 그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보증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 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연의 채무변제주의)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금융회사는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채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채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 1 항 제 1 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채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채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파,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 1 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채무자가 생애에 중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채무자가 가개인 경우 7 영업일)전까지 채무자로부터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개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채무자가 가개인 경우 7 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채무자가 가개인 경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입된 경우에는 14 일간 지체한 때 기입이 아닌 경우에는 30 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 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 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회) 이상 연체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의 10 분의 1 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회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채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 1 항 제 1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보전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이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채권보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22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상거래 개시, 결산소자의 방법,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금융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할부금융거래에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정보·부도정보·관련연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특목된 때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변조 또는 그외로 부실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6 조 제 1 항, 제 18 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대출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압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설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금융회사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칭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9조 (기한이외의 상실회상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대한 통지)

-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외에 상실회상된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주택자금대출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8 조에 의하여 기한이외에 상실회상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외에 상실회상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외의 상실회상된 경우라도, 제 8 조제 5 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외에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통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외에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에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계약에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채무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을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상실 철회·환권보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환권보안 적용되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시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문 문자메시지로 철회·환권보안 기재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중임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연의 상실회상)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대채무)

① 어음의 할인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통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원 기재금액에 의한 환대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원 민간기관에 환대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도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 8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서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대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대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도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 제 2 항의 경우에도, 제 8 조 제 5 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 8 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 12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대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② 제 1 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와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금 반환청구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 1 항에 의한 상계나 제 2 항에 의한 대리환급금반환청구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금반환청구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조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5 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야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금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정지일 때
3. 교통·통신의 중절, 중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 13 조, 제 14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 16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종단을 위하여 지급금부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일괄하여 부족한 때에는 비유,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일괄하여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른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익을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반환청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6 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18 조 (위법행위·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지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할 후 갹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면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 19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성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 19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는 계속될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중립부 내용중립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전달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함

제 22 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 재산·부채현황·경영·업종 또는 융자조건에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종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여음교환소의 거래점지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정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여신거래조건변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11 조에 따른 기한전의 일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23 조의 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하,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 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를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5.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금융회사는 제 1 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 24 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인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타당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5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② 제 1 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제 1 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이전까지(제 1 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타당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